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523762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문주연

피고1. A(개명 전: B)

2. C

변론 종결2021. 4. 13.

판결 선고2021. 6.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236,002원과 그 중 20,386,602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8. 9.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 9. 17. 접수 제254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5. 1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기한 2023. 5. 11., 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 가평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8.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경위

피고 C은 피고 A의 전 남편(2018. 10. 25. 협의이혼)인 F의 아들이다. 피고 A은 2018. 9. 1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 9. 17. 접수 제2544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

피고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1	- 이 사건 각 부동산	281,219,700	-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 감정평가서 갑제14호증)
- 경기 가평군 G 답 138m ²			
합계	281,219,700		

2) 소극재산

1	이 사건 대출금채무	D은행 가평군지점	20,000,000	- 여신거래약정서 갑제4호증)- 부채증명원 갑제15호증)
2	대여금채무1)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기 가평군 G 답 138m ² (공동담보)에 관하여 2018.6.15.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H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여금채무	H	40,000,000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3	대여금채무	피고 C	171,000,000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갑제17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각 차용증 갑제18호증의 1, 2)
4	신용카드대금	I카드	5,409,510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5	신용카드대금	J카드	10,467,108	- 채무확인서 갑제19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6	신용카드대금	K카드	10,620,558	- 부채증명서 갑제20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부채증명서 갑제21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7	사업자카드사용 대금채무	L조합	2,099,340	- 카드부채확인서 갑제22호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갑제16호증)
8	대여금채무	F	104,000,000	- 차용증 갑제23호증)
9	물상보증채무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기 가평군 G 답 138m ² (공동담보)에 관하여 2018.2.13.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M조합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자 C)	M조합	103,000,000	-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갑제24호증)- 채권계산서 갑제25호증)

1	이 사건 대출금채무	D은행 가평군지점	20,000,000	- 여신거래약정서 갑제4호증)- 부채증명원 갑제15호증)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공단 남양주	980,500	-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갑제24호증)- 교부청구서 갑제26호증)
11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공단 남양주	77,500	-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갑제24호증)- 교부청구서 갑제26호증)
합계	467,654,516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8. 12. 12. D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9. 3. 28.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합계 20,386,60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849,4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가평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21,236,002원(= 대위변제금 20,386,602원 + 비용 849,4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386,6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0. 21.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 A은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악화 등으로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되다가 2018. 12. 12.에 이르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19. 3. 28.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20,386,602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2)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A과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A에게 2017. 5. 24.부터 2018. 8. 3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 및 갑 제3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의 아버지 F와 피고 A은 부부사이였다는 점, ② 피고 C은 피고 A에게 1억 7,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A의 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인 F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피고 A이 F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의 아버지 F가 피고 A 운영의 사업장 건축과 초기 운영자금에 관여하였고 F도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서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불과 3개월도 안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 C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도영

별지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H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여금채무

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기 가평군 G 답 138m²(공동담보)에 관하여 2018.2.13.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M조합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